

1-7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2026. 2. 25. 제정

주무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EHS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장”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 근무 공간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제반업무를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안내할 수 있는 전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법령”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을 간결하게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공개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이 산학협력단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종사자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관계 법령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산학협력단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관리조직이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학협력단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산학협력단 내에서 도급사업을 행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의 중지
3. 도급작업과 관련한 재해 예방조치

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도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과 각 부서(팀)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소관 사업장 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학협력단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에서 정한 보건과 관련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10명 이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과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관련 법과 법에 따른 명령,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의 생활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 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기록·보존) ① 산학협력단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또는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의 서류 보존 기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장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제17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공유되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참고하여 안전보건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조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산학협력단장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산학협력단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 조치”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19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①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허가 없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실무부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실무부서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리,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검사)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이하 “기계·기구 등” 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 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안전수칙 준수) ① 실무부서는 안전보건상 유해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위험물질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실무부서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① 실무부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제26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 등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보건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정기안전점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전·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점검 결과 유해·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제27조(비상조치계획) ① 산학협력단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2.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3. 내·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체계
4. 기타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대학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고 대비 및 대응은 중앙대학교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28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산학협력단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산학협력단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29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산학협력단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③ 중앙대학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고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진행은 중앙대학교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평가 내용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전자메일을 통한 방법

2.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시기 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2조(진단결과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그 밖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학협력단 소속 외 근로자도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며 수급인등이 이행한다.

제33조(질병자 근로금지·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제3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

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관리감독자 또는 실무부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또는 실무부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학협력단장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구입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안전보건 보호구) 실무부서는 유해·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산학협력단장은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

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제39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 ① 산학협력단장은 종사자가 산학협력단 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부서 중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과 교육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 등 종사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건설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제41조(긴급조치) ①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해당 실무부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2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해당 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학EHS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산학EHS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 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부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 절차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4조(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해당 부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산학EHS팀”에 보고하고 개선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계획서를 “산학EHS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산학협력단장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요 사항 전달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 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에는 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평가와 정기 평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계된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제4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위험성 평가의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문서에는 평가의 주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49조(근로자 의견청취) ① 산학협력단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관리감독자에게 수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전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아래 각 호의 기구 또는 제도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 제안제도
3. 회의 또는 간담회

③ 산학협력단장은 각 의견청취절차에서 접수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청취,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제50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서류의 보존)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는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2조(규정의 준수 등) ① 산학협력단의 모든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3조(포상) ① 산학협력단장은 안전·보건 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협력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련 제안이 채택된 근로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근로자

제54조(징계) 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초래한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상 중요사항의 지시 및 명령에 대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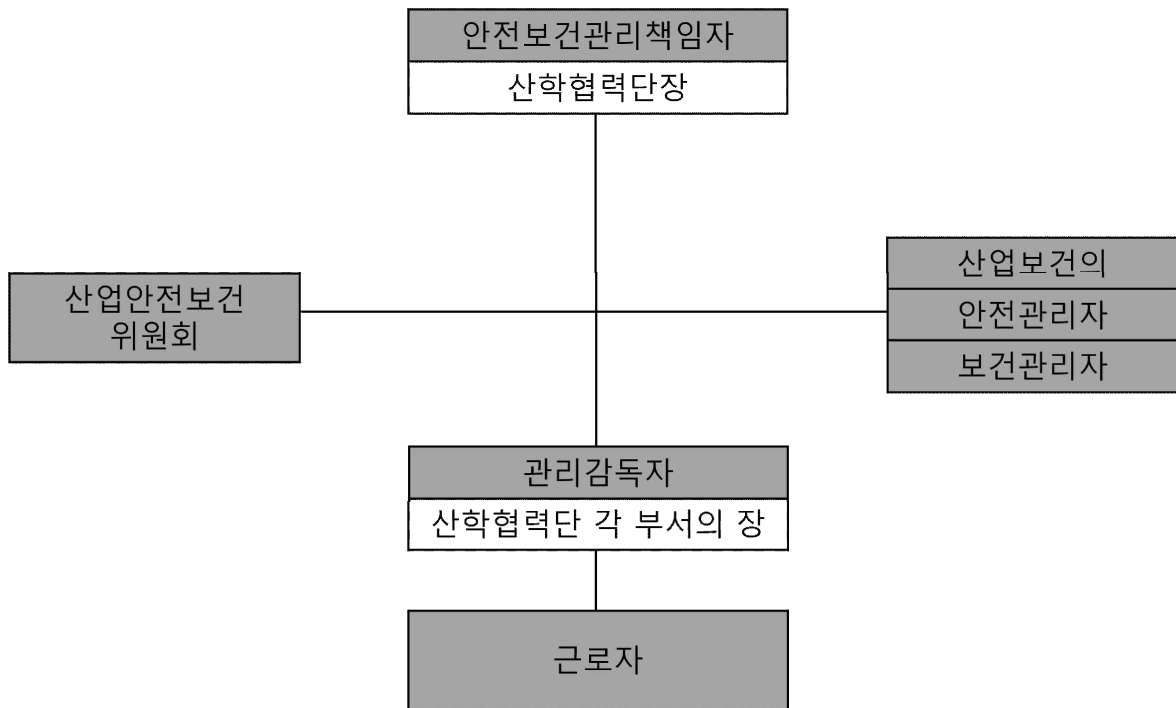
제55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 제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2] 안전보건교육 시간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